

제328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6. 7. 20.(월)



달 성 군 의 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39호
- 제 출 일: 2026년 7월 3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통합돌봄 시행 등 국정과제 수행에 대응하고, 민선9기 공약 및 역점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 국소속기관 단위 개정사항: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 도시공원과 소속 변경: 기획전략국 → 문화관광국
 - 농업정책과 소속 변경: 경제환경국 → 농업기술센터
 - 위생과 소속 변경: 주민복지국 → 보건소
 - － 부서 단위 개정사항: 안 제7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 경제산업과: 과 분리(경제산업과 → 기업일자리과, 민생경제과)
 - 도시공원과: 과 분리(도시공원과 → 조경사업과, 조경관리과)
 - 시설관리사업소: 사업소 신설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 기업일자리과 : 이동(기업지원, 원스톱기업, 일자리창출 ← 경제산업과),
명칭변경(원스톱기업 → 기업정책, 일자리창출 → 일자리), 신설(산업기반)
 - 민생경제과 : 이동(지역경제, 에너지관리 ← 경제산업과),
명칭변경(지역경제 → 지역민생), 신설(사회적 경제)
 - 조경사업과 : 이동(녹지, 조경사업, 공원조성 ← 도시공원과)
명칭변경(녹지 → 녹지조성)
 - 조경관리과 : 이동(정원, 조경관리 ← 조경사업과),
명칭변경(조경관리 → 녹지관리), 신설(조경행정, 공원관리)
 - 건강증진과 : 명칭변경(방문보건 → 건강생활, 건강증진센터운영
→ 정신건강), 신설(건강돌봄)
 - 위생과 : 신설(위생민원)
 - 시설관리사업소 : 신설(시설행정, 체육시설관리, 여가시설관리)
 - 읍·면(공통) : 신설(통합돌봄)
 - 화원읍·다사읍 : 팀 통합(복지+맞춤형복지 → 맞춤형복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직의 기능을 행정환경 변화와 정책수요에 맞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국·직속기관 단위 개정사항은 부서의 성격과 기능을 중심으로 소속을 조정하여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공원과를 문화관광국으로,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위생과를 보건소로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 부서 단위 개정사항은 경제산업과를 기업일자리과와 민생경제과로 분리하여 기업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공원과를 조경사업과와 조경관리과로 분리하여 조경 조성 및 유지관리 기능을 전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대폭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상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여 책임성과 주민 접근성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팀 단위 개정사항은 주민 밀착형 민원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 부서의 명칭을 기능중심으로 직관적으로 변경하고 대내외적 행정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서의 명칭과 분장 사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재편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실무적 요구에 조직 효율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의 입법 정비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통합돌봄 시행 등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9기 공약 및 역점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40호
- 제 출 일: 2026년 7월 3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수요와 지역현안수요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이관 및 사업소 신설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안 제2조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1,063명 → 1,141명(+78)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 1,038명 → 1,116명(+78)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변동없음)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안[별표 3]
 - 총 정원 : 1,063명 → 1,141명(+78)
 - 본청 정원 : 703명 → 685명(△18)
 - 직속기관 정원 : 112명 → 159명(+47)
 - 사업소 정원 : 0명 → 12명(+12)
 - 읍 및 출장소 정원 : 172명 → 197명(+25)

- 면 정원 : 51명 → 63명(+12)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사유서 첨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앞서 검토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부서별 기능 조정에 발을 맞추고 우리군의 다변화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국가정책 등의 수요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이관 및 사업소 신설 등 부서 기능에 부합하는 정원 조정으로
 - 안 제2조 중 총 정원 1,063명을 1,141명으로 증원하고,
 - 안 제2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038명을 1,116명으로 증원하는 등 총 78명을 증원하며,
 - 직급별 정원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정원을 5급 3명, 6급 20명, 7급 25명, 8급 24명, 9급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 정원 조정을 통해 민선9기 군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41호
- 제 출 일: 2026년 7월 3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2.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역주민 시설사용 기회균등 명문화 및 허가기준 구체화, 군수의 사전승인 및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안 제4조제4항)
-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근거 명확화 및 위반자에 대한 사용 제한 및 처분 결과 공개 규정 신설(안 제16조)
-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위탁계약 해지 근거 및 해지된 자에 대한 1년간 참여제한 규정 신설(안 제24조의2)
- [별표5]장기복무 제대군인 감면 규정 신설(안 제14조)

4.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누구나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제4항에 지역주민의 시설 사용 기회균등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시설 이용에 있어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이용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세부 허가기준은 규칙이나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정변경이나 운영상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운영규정에 대한 군수의 사전 승인과 지도·감독 체계를 둠으로써 수탁자의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16조에는 사용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처분 결과 공개는 시설 이용 질서 확립과 유사 위반행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처분 결과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개 범위와 방법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 제24조의2에 수탁자의 의무 위반 시 위탁계약 해지 근거를 마련하고, 계약 해지된 자에 대한 참여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탁자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실 운영과 계약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 및 참여 제한은 수탁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만큼, 적용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보장하여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 별표5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둠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예우를 강화하고 공공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운영기준과 이용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조문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